

[별첨]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선거 안내문

1. 입후보자, 선거인, 추천인 안내

가. 입후보자 자격: 우리협회 정관에 의한 회원으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정회원은 제 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후,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노숙인 시설로 한다.

②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협회의 특별회원은 제 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노숙인 사업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나. 선거인: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의 회원시설의 장으로 한다.

***총회 당일 위임 참석(성원)은 가능하나, 선거 위임은 불가 함**

다. 추천인 명부: 선거인에 포함된 회원시설의 장 3인 이상 추천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인에서 제외(※선거관리위원회 : 염원숙(아가페의집) 이문재(구 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이범승(희망나무) 이병희(만나샘) 한명섭(비전트레이닝센터)

2. 입후보 신청 접수서류 (모두제출)

가. 등록신청서(서식01호)

나. 추천서(서식02호)

-선거인에 포함된 회원시설의 장 3명 이상(중복추천 불가)

-추천자 본인 서명이 날인 된 원본제출

다. 공약서(서식03호): 사진을 포함하여 자유 형식으로 작성

3. 후보 자격 결정 통지 및 기호 부여

가. 기호부여: 입후보 성명의 가나다 순

나. 기호통보: 입후보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4.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가. 선거운동기간: 입후보자 공고 직후 ~ 2020년 01월 29일(수) 18시 까지

나. 선거운동방법: 대면활동, 전화, 온라인 매체 활용 등 가능

5. 선거인 명부 안내

가. 선거인: 협회장 등 총회 당일 선거권을 소유한 회원시설의 장

나. 선거인 명부 확정: 2020년 01월 20일(월) 이사회를 통해 확정

-우리 협회 정관에 의거 (회원의 권리)에 문제가 없는 회원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특별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외한다.(신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회원탈퇴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④회원이 제7조(회원의 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자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복권한다.

다. 참조: 2019년 01월 06일 현재 회원시설의 장(예비 선거인)

회원시설명	시설장명	회원시설명	시설장명
24시간게스트하우스	고민수	수송보현의집	신용삼
가나안쉼터	김정재	영등포보현의집	임도영
강동복지관희망의집	임정백	십자가쉼터	안치영
광야홈리스센터	정경화	아가페의집	염원숙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이문재	아침을여는집	추형선
구세군가재울쉼터	이호영	양평쉼터	김도진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최동식	디딤센터	김진미
길가온혜명	배명희	열린여성센터	서정화
남대문쪽방상담소	정수현	옹달샘드롭인센터	박성곤
내일의집	정태효	만나샘	이병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허용구	희망나무	이범승
다일작은천국	이명현	천애원희망의집	안주석
대한성공회살림터	최석진	청담광명의집	고순석
돈의동쪽방상담소	최영민	햇살보금자리	김기용
창신동쪽방상담소	이도희	화엄동산	임희선
비전트레이닝센터	한명섭	흰돌회	김현숙
구세군서대문사랑방	김노정	애원희망흙	우경연
서울역쪽방상담소	김갑록	영등포쪽방상담소	김형옥
따스한체움터	박광빈	은평의마을	홍봉식
소중한사람들	유정옥	서울여성보호센터	서정옥

6. 기타 사항

- 가. 상기 공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름.
나. 기타 이의 신청이나 질의 사항은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선거관리위원회 (02-713-3698)에 문의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선거관리위원장

